

창원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가단1127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태

변 론 종 결 2021. 12. 7.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2.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D 답 304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0. 1. 31. 접수 제9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0. 1.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던 A은 2020. 1. 13.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숙모인 피고와 김해시 D 답 30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가격을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20.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 33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을 갈음하고, A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은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20. 2. 19. ‘E’을 폐업하고, 그 직후 파산신청을 준비하여 2020. 3. 31.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0하단498, 2020하면498). 위 법원은 2020. 7. 27.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33,36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7, 8, 9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8, 갑 16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인권의 행사에 관한 판단

가. 부인권의 행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포함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부당한 염가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38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생기게 한 원인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용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숙모인 피고에게 시가 633,36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83,360,000원 가량 저렴한 550,000,000원에 매각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계약금 60,000,000원을 2020. 1. 13.과 2020. 1. 14. 2회에 걸쳐 G에게 모두 송금한 사실, 잔금 160,000,000원을 자신의 어머니인 H에게 모두 송금한 사실(갑 17, 18호증의 각 기재)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A은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행위는 A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 방법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고(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1조합을 근저당권자로 A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2020. 1. 31.자 계약인수에 따라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으로 변경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한편,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취지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가액배상의 기준시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즉시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96조에 의해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인의 소에서 가액배상의 기준시점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2021. 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신청서 부분이 2021. 2.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가액배상의 기준시점은 2021. 2. 8.이다.

다.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나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1. 1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633,36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한 2021. 2. 8. 당시의 시가도 위 금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변경된 조항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330,000,000원은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303,360,000원(= 633,360,000원 -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의 송달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다음 날인 2021. 2. 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